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0. 3.

제 출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읍·면 위임사무 일부가 군으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의 일부에 대해 위임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나. 상위법령명의 변경,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변경, 사장된 업무 정비

2. 주요내용

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사무 삭제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변경되면서 관련법 조항 삭제됨.

나. “농지의 위탁·임대·전용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사무 삭제

- 상위법 근거조항 삭제.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에 따른 접수 및 조사” 사무 변경

- 읍·면은 “접수·신청”만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조사업무는 군에서 수행

라. 상위 근거법령명 및 근거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09.12.18 ~ 2010.01.07(20일간), 의견제출 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명 (제2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 시장관리운영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3조 및 제19조
2	◦ 시장사용허가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4조 및 제19조
3	◦ 시장사용료 징수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17조 및 제19조
4	◦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 주민등록법 제40조
5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77조제8항
6	◦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 변경 또는 폐지신고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77조제8항
7	◦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및 봉인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77조제8항
8	◦ 이륜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처분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77조제8항
9	◦ 읍·면직원의 소내 전보권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0	◦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군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및 결손처분	◦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11	◦ 불용품 매각처리	◦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제4조
12	◦ 공유잡종재산 대부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13	◦ 매·화장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4	◦ 개장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5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16	◦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 지도·감독	◦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8조 내지 제30조
17	◦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지도·감독	◦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0조제1항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무 (※ 건축법 제9조 등의 신고대상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신고의 수리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수리 - 용도변경신고의 수리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수리 - 착공신고의 수리 -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 공용건축물의 건축협의 - 도로의 지정·폐지 및 변경(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제35조) -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 ◦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철거신고 및 멸실신고의 수리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표시사항의 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정정 및 건축물대장의 말소 (※ 건축법 제8종에 의한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의한 용도 변경허가에 따른 ‘기재 및 변경’은 제외) - 건축물부존재 증명서의 발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71조제3항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 (※ 건축법 제9조 등의 신고대상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 건축물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건축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관련한 기타 사무 ◦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행위와 관련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련 사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71조제3항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에 의한 광고물의 신고사무 (단, 당초허가대상광고물의 변경 및 기간연장 신고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시행령 제35조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35조제2항, 시행령 제35조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마재배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마을)공동묘지사용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에 따른 접수 및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04조

관계법령 발췌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지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3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군수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22조(신청에 대한 조사) ① 군수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